

**신구조문대비표**  
「관세법 시행령」

<b>관세법 시행령</b> [대통령령 제34278호, 2024. 2. 29., 일부개정]	<b>관세법 시행령</b> [대통령령 제34468호, 2024. 4. 30., 타법개정]
<p><b>제141조의2(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)</b> ① 법 제 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9조에 따른 <b>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</b></p> <p>6. ~ 11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<b>제141조의2(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)</b> ① 법 제 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9조에 따른 <b>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</b></p> <p>6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